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636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 고 1. A

2. B

3. C

피고 C의 소송대리인 D

4. E (개명 전 성명 F)

5. G

6. D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원고에게,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은 각 9,208,142원, 피고 E, G은 각 4,604,071원과 그중 피고 A, B, C은 각 9,137,872원, 피고 E, G은 각 4,568,936원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피고 A, C은 2022. 10. 11.까지, 피고 B는 2022. 10. 12.까지, 피고 E, G은 2022. 10. 13.까지 연 8%,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과 H 사이에 2022.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36,832,56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36,832,56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 청구(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6, 8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 주장 사실(피고 D에 대한 부분 제외)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 B, C, E, G은 H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피고 A, B, C: 각 2/8, 피고 E, G: 각 1/8)에 따라 계산한 주문 1항 기재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피고 D)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H에 대한 구상금 채권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H은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36,832,568원(=대위변제금 36,551,490원+대지급금 225,000원+손해금 56,078원)과 그중 36,551,390원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과 H의 증여계약

H은 2022. 5. 27.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6. 10.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D은 2022. 8. 5.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H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H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해행위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H이 피고 D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H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H의 사정을 모르고 증여받은 것이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피고 D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I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갑 7호증의 1, 2에 의하면 2008년 3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7,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시가는 위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6,832,568원이므로, 결국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구상금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6,832,56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6,832,56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재현

부동산 목록

1. 목포시 J 대 145㎡
2. 목포시 J에 있는 K동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3.46㎡
2층 69.07㎡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물치장 3.96㎡. 끝.

청 구 원 인

1. 구상금 채권

가. 원고는 망 H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H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보증인인 망 H의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망 H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망 H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각 아래 원고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습니다.[갑 제1,2호증]

보증번호	L	M
채무자	H	H
보증금액	42,500,000원	30,000,000원
작성일자	2019. 4. 22.	2020. 5. 8.
보증기한	2024. 4. 22.	2025. 5. 7.
보증방법	개별보증	개별보증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	30,000,000원
보증비율	85%	100%
원고	N은행 동명동지점	N은행 동명동지점

나. 망 H은 2022. 7. 26. 원금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갑 제

3호증], 그러자 채권자인 N은행 동명동지점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금액의 대위변제를 요청하므로 원고는 2022. 9. 22. N은행 동명동지점에 대출원금 및 이자로 각 15,201,244원(보증번호 L)과 21,350,246 원(보증번호 M) 합계 36,551,490원 (=21,350,246원+ 15,201,244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이와는 별도로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225,000원을 지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대위변제일부터 2022. 9. 28.까지 신용보증약정 소정의 56,078원의 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5,6호증].

2. 사해행위

가. 망 H은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2022. 5. 27.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2.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접수 제20042호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7호증].

나. 살피건대 망 H은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이 되거나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H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고 D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2. 8. 5.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 D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므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바,

위 부동산의 시가는 부동산등기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8. 3. 17.경 거래가액이 72,00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가는 당연히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그 중 위 구상금 채권인 36,832,568원 및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장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장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3. 결어

가. 그렇다면 망 H은 원고에게 36,832,568원[=36,551,490원(대위변제금)+225,000원(대지급금)+56,078원(손해금)] 및 위 금원 중 36,551,490원에 대하여 2022. 9.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신용보증약정 소정의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망 H은 2022. 7. 7. 사망하여 피고 A, B, C이 각 2/8 지분을, 피고 E, G이 각

1/8 지분을 각 상속받았고, 나아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2년단303호로 위 피고들은 모두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는 바[갑 제8호증].

그렇다면 망 H(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아래 표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이 피고 A, B, C은 각 9,208,142원, 피고 E, G은 각 4,604,071원 및 위 금원 중 피고 A, B, C은 각 9,137,872원, 피고 E, G은 각 4,568,936원에 대하여 각 2022.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신용보증약정 소정의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36,832,568원	;	36,832,568원×2/8=9,208,142원,	36,832,568원
×1/8=4,604,071,	이하	원미만 버림	
* 36,551,490원	:	36,551,490원×2/8=9,137,872원,	36,551,490원
×1/8=4,568,936			

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H과 피고 D 사이에 2022.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구상금 채권인 36,832,568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만 그후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으로 위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 배상으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 36,832,568원 및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